

안전관리계획서

제정일자 : 2018. 01. 01.

개정일자 : 2019. 05. 01.

개정일자 : 2020. 05. 01.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부설 자비손노인복지센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안전관리자 선정)	1
제4조(업무분장)	1
제5조(안전점검 및 조치)	2
제6조(위해시설물 발견 시 보고)	2
제7조(보수업무)	3
제8조(복수업무의 책임 한계)	4

제2장 안전사고 예방계획

제9조(예방계획의 대상 및 목적)	4
제10조(보호장구의 착용)	4
제11조(작업복의 착용)	4
제12조(시설물의 관리)	4
제13조(위험물의 관리)	4
제14조(작업통로의 유지)	4
제15조(작업환경의 개선)	4
제16조(작업규율의 확립)	5
제17조(예방계획 수립기준)	5

제3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제18조(보일러 및 펌프실 안전점검)	6
제19조(기관설비 안전관리)	6

제20조(보일러 운전관리)	7
제21조(변전설비 안전점검)	7
제22조(변전설비 안전관리)	8
제23조(전기설비의 안전관리)	8
제24조(전기설비의 이상이나 고장시 조치)	8
제25조(비상전원 안전관리)	8
제26조(소방시설 안전점검)	9
제27조(소방시설의 안전관리)	9
제28조(소방설비 안전관리)	9
제29조(승강기 설비의 안전점검 및 보수)	10
제30조(승강기 운전관리)	10
제31조(승강기 설비의 안전관리)	10
제32조(저수조 안전(위생)점검)	10
제33조(급수시설 안전관리)	10
제34조(기타부대시설의 안전점검)	11
제35조(기타 시설의 안전관리)	11
제36조(건축시설의 안전관리)	12
제37조(토목시설의 안전관리)	12

제4장 안전관리 교육

제38조(교육계획)	12
제39조(교육훈련)	13
제40조(교안)	13
제41조(교육의 성질)	13

제5장 기타 계획

제42조(예산지원)	13
제43조(계획 외 사항)	13
제44조(계획의 조정)	13

부 칙

별표1 (안전관리적용대상)	15
별표2 (시설별 안전관리자 선정기준)	16
별표3 (보일러 및 펌프설비 안전점검)	17
별표4 (변전설비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	18
별표5 (소방설비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	19
별표6 (승강기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 사항)	20
별표7 (저수조 안전(위생)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	21
별표8 (기타부대시설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	22

서 식

서식1 (시설물안전관리 책임자 명패)	23
서식2 (해빙기 안전점검표)	24
서식3 (우기 안전점검표)	25
서식4 (월동기 안전점검표)	26
서식5 (건축시설물 안전점검표)	27
서식6 (기계설비 안전점검표)	28
서식7 (소방설비 안전점검표)	29
서식8 (토목, 건축, 기타시설 안전점검표)	30
서식9 (전기설비 안전점검표-일일/주-)	31

서식10 (전기설비 안전점검표-월/분기-)	32
서식11 (펌프설비 안전점검표-일일/주-)	33
서식12 (펌프설비 안전점검표-월/분기-)	34
서식13 (저수조 안전점검표)	35
서식14 (승강기 안전점검표)	36
서식15 (안전교육일지)	37
서식16 (방화관리일지)	38
서식17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39

부 록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SOP)
- 소방계획서
- 응급사고 대응지침
- 평면도 및 비상대피도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계획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매뉴얼(SOP)' 규정에 의거 본 복지관의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시키며, 안전활동의 생활화 계몽,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정기점검, 순찰활동 등으로 위해요소로부터 회원 및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양호한 시설환경과 업무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시설의 재산 및 인원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계획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세실로 250에 소재한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이하 “본 복지관”이라 한다.)의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 및 부속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안전관리자 선정)

본 복지관의 관리주체는 각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책임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본 복지관의 관장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2. 안전관리 책임자 : 본 복지관의 총무과장으로서 시설물별 유지·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
3. 안전관리자 : 시설물을 직접적으로 운전·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시설관리팀장 및 시설관리 담당자

② 제1항의 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 관리자의 명패를 각 시설물의 위치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일일 점검일지 및 정기 점검일지에 점검내용을 기록하고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점검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분담)

본 복지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의해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의 책임 아래 조정될 수 있다.

①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및 안전관리 총괄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책임의 명문화
3. 안전관리 계획에 의한 지도 교육 및 감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해시설물에 대한 각종 안전조치
5. 안전관리 이행상태의 점검 및 확인
6.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② 안전관리책임자

1. 담당부분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및 시행

2. 담당부분 시설물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담당부분 시설물의 위해요소의 제거와 보수 등의 조치
3.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4.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5. 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6. 일상 및 정기점검 실시 및 그의 기록 및 보관

③ 안전관리자

1.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담당분야 자체 안전점검 실시

제5조 (안전점검 및 조치)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가 있는 시설에 대한 조치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시설물별 안전점검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양호: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이거나 시설물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 요주의: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시설물과 그 부분품이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 연한이 경과 하는 등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우려가 있는 경우
3. 요수리: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시설물의 청결 상태가 불량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및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4. 이용금지: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상 징후가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②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및 춘천시에 보고 및 정비 보완하고 조치사항을 기록·유지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시설물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목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리 중 사용금지”라는 표시
2. 수리의 소요시간 표시
3. 수리자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표시

⑤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 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이용금지 조치를 취한 후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해시설물 발견 시 보고)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상 징후가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신속한 방법으로 6하원칙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한다.

① 긴급보고

이용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한 방법으로 6하원칙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한다.

1. 야간이나 휴일에는 당직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책임자는 사태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고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관계관서의 협조가 요구될 경우 당직 책임자는 신속히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고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중간보고

1. 위해시설물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긴급보고 후 24시간 내에 상세한 상황을 서면으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서면보고를 접수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 후 지시한다.

③ 사고처리 후 보고

1. 위해 요소의 제거는 근무자 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처리하고 처리종료와 동시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2. 처리에 지연이 있을 시는 지연사유를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사고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7조 (보수업무)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위해상태의 발견에 따른 보수업무는 다음에 의한다.

①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1. 하자신고 및 접수처리

가. 총무과 : 하자접수부에 하자사항을 기록하고 하자보수책임업체에 급한 사항은 전통으로 통보하며, 위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 서면으로 통보한다.

나. 하자보수책임업체 : 하자보수 접수 후 위급사항은 24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위급사항이 아닐 경우 3일 이내에 조치하여 본 복지관 총무과에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다. 안전관리자 : 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총무과에 보고

2. 안전관리책임자는 하자보수 사항에 대한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한다.

3. 하자보수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그 진척 사항을 담당 안전관리책임자는 수시로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 한 경우

1. 위해상태가 자체기술 인력으로 보수 가능한 경우

가. 보수 후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처리사항을 기록하여 자체보관하고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나.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처리사항을 춘천시에 보고한다.

② 위해상태의 보수 범위가 자체기술 인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즉시 춘천시에 보고하고 당해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8조 (보수업무의 책임한계)

위해시설물에 대한 보수업무의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본 복지관 사무소 : 전체시설물과 부대시설물에 대한 보수업무 및 감독
2. 입주자(자비손노인복지센터) : 전유부분의 시설물의 보수업무(입주자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부분)
3. 시공업체 : 해당분야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업무(법정 책임기간 내)

제2장 안전사고 예방계획

제9조 (예방계획의 대상 및 목적)

제2조의 시설물을 관리함으로서 사고의 발생이 예견되는 대상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한다.

제10조 (보호장구의 착용)

다음 각호의 작업 시는 반드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1.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
2. 용접 절단 작업
3.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5. 감전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 6 기타 유해 위험한 작업

제11조 (작업복의 착용)

작업 중에는 안전보건 관리수칙 상 허용된 기준의 작업복 외 착용을 금한다.

제12조 (시설물의 관리)

작업안정을 위하여 기계, 장비, 기구 등의 시설물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목체검사 등 점검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13조 (위험물의 관리)

작업장에 두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위험물의 보관은 필요한 최소량에 한하고 위험물 취급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소정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한다.

제14조 (작업통로 유지)

작업통로는 작업장과 구별을 분명히 하여 이를 잘 보존하며, 작업통로 위에 물품을 놓거나 위험물을 놓지 않도록 한다.

제15조 (작업환경의 개선)

현장 작업자는 정리정돈 및 청소에 노력하고 환기, 채광, 조명, 소음, 분진 등에 유의하여 안

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16조 (작업규율의 확립)

위해방지를 위한 제반 준수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엄수토록 하여 작업규율을 확립한다.

제17조 (예방계획 수립기준)

1. 법적설치기준에 의거 시설이 미비 된 곳을 보강하여 사고요인을 제거한다.
 - 가. 법적시설의 설치 유무확인
 - 나. 시설물간의 이격거리
 - 다. 설치시설물 품질의 적부
 - 라. 설치시설물 용량적부
 - 마. 설치된 시설물의 설치위치 적부
 - 바. 기타 주위여건 상태
2. 시설물의 공정도 이외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예방
 - 가. 사람의 동작에서 일어나는 사고
 - 1) 사람의 추락 실족 또는 물체의 낙반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표식 또는 통제
 - 2) 어두운 곳을 출입 또는 왕래하는 곳에는 조명설치
 - 3) 커브 또는 요철부분이 갑자기 나타나는 곳은 나타나기 전 보기 쉬운 곳에 설치
 - 나. 시설물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 1) 보일러, 가스, 변압기 등의 폭발 안전에 대비하여 예방점검 및 안전운전실시
 - 2) 붕괴되어 압사의 위험이 있는 곳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대책강구
 - 3) 전기적인 순간 회전물체(자동 모타, 펌프) 또는 불규칙적이고 동적인 기기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
 - 다. 액체의 누수에서 오는 사고
 - 1) 응축수 기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주의하여 표식 또는 방호망을 설치한다.
 - 2) 급수저장조의 누수로 인한 침수를 대비하여 자동급수장치 또는 밸브의 점검
 - 3) 연료의 누수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확인
 - 4) 기타 지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옹벽 등의 붕괴위험을 사전점검
 - 라. 접촉으로 인한 사고
 - 1) 전기에 의한 합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의조작 금지
 - 2) 보일러 전열면 또는 열수탱크 등에 의한 화상주의
3. 조작에 의한 사고
 - 가. 신체적 및 정신적 요인
 - 1) 작업 성실상 신체 적합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별하여 부여한다.
 - 2) 힘든 작업을 계속하지 말고 일의 양과 순서를 정하여 적정하게 배분하여 작업한다.
 - 3) 질병이 있는 자에게 오랜 시간 혼자 근무시키지 말 것
 - 4) 태만, 불만, 반항, 외고집, 근로 의욕 침체 등의 요인을 분석하여 이로 인한 사고의 요인을 예방한다.
 - 나. 관리적 요인
 - 1)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작업자를 적정한 장소에 배치를 한다.
 - 2) 미숙련자에게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혼자 맡기지 않도록 하고 숙련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3) 매사의 작업을 경솔하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4) 사고의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을 추측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 5) 각 시설별 세부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일상)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내용은 본 복지관 기본 계획서 별첨(점검표)에 준하고 기타 시설별 안전수칙에 따른다)

4. 기타 외적인 사고요인 예방

- 가. 작업자의 작업복은 예리한 물체에 대하여 찢어지지 않고 타격에 대한 탄력과 정전기가 나지 않는 것으로서 신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머리털이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모자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다. 옷소매 상의자락 기타 착용복의 일부가 회전체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라. 화염에 의한 시력상실, 가스에 의한 중독, 감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히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마. 작업에 착수하기 전 충분한 장비 및 기술인원을 갖춘 후에 개시한다.
- 바. 작업장에는 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 사. 작업장에는 불필요한 물체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제18조 (보일러 및 펌프실 안전점검)

주택법 제49조의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주택법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관리기준에 의해 중앙집중식 난방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일러 및 펌프실의 안전점검 주기 점검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19조 (기관설비 안전관리)

기관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취침, 음주, 이석 및 관계자외의 출입을 일체 금한다.
2. 보일러는 무면허자나 무인 운전을 금한다.
3. 보일러의 운전이나 기타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4. 보일러 가동자는 운전수칙을 준수하여 항상 안전에 대비한다.
5. 각종 기기의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6. 소화기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언제든지 사용 가능토록 정위치에 둔다.
7. 급유관의 누유 유무를 수시확인하고 흘린 기름은 즉시 제거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8. 실내에 인화 물질의 반입을 일체 금한다.
9. 보일러 위에 불필요한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운전 중에 사람이 올라가는 것도 금해야 한다.
10. 근무자는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하여 항상 주임 및 비번자의 비상연락망을 숙지한다.
11. 근무 교대 시는 근무사항을 철저히 인계·인수 한다.

제20조 (보일러 운전관리)

보일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동 시

- 가. 급수 급유 급배기 및 중온수 에어분출을 실시한다.
- 나. 유온 및 유량계를 확인한다.
- 다. 점화준비가 완료되면 추가작업을 3분 이상 실시한다.
- 라. 착화 스위치를 넣고 화염을 확인한다.
- 마. 점화를 확인한다.
- 바. 댐퍼 및 유량을 조절한다.
- 사. 착화 스위치를 내리고 가동시간을 기록한다.

2. 운전 중

- 가. 화염상태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본다.(실화운전 임금)
- 나. 압력계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본다.(제한 압력초과운전 임금)
- 다. 중온수 에어분출을 실시하며 압력계와 온도계를 확인한다.
- 라. 서비스탱크의 유량 및 보충수 탱크의 보충수량을 확인한다.
- 마. 병커씨유의 예열온도에 유의한다.
- 바. 급수펌프 송풍기 버너의 가동상태에 주의한다.
- 사. 굴뚝의 매연발생의 여부를 수시로 관찰한다.(매연발생 임금)
- 아. 보일러 자체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소화한다.

3. 소화 시

- 가. 연료공급을 차단한다.
- 나. 추가작업을 3분 이상 실시한다.
- 다. 기름의 누출 여부를 조사한다.
- 라. 모든 기기의 상태와 온도계와 압력계를 확인한다.
- 마. 전원을 내린다.
- 바. 버너를 인출하여 소손여부를 확인하고 청소한다.
- 사. 소화시간 및 유량계 수치를 기록한다.

4. 점화실패, 실화 및 이상 발견 시

- 가.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해결한다.
- 나. 가동순서에 따라 재 점화한다.

5. 송기 시

- 가. 밸브는 천천히 개방하여 수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나. 압력을 초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21조 (변전설비 안전점검)

주택법 제49조의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주택법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관리기준에 의해 변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변전설비의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22조 (변전설비 안전관리)

변전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취침 음주 이석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일체 금한다.
2. 운전 및 작업은 책임감을 갖고 무리 없이 성실히 수행한다.
3. 각종 기기는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처리 한다.
4. 점검 및 보수는 가급적 기기를 정지시킨 후 실시한다.
5. 운전조작은 2인 이상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인은 사고방지를 위하여 오조작이 없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6. 기계를 가동할 때에는 주위를 점검하고 신호, 연락을 확실히 하면서 시작한다.
7. 각종 기기는 신속 정확 안전하게 조작한다.
8. 송전, 정전 및 작업 중임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판을 부착한다.
9.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장비는 정비를 철저히 한다.
10. 현장에는 관계도면 및 계통도를 비치하고 근무자 전원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11. 근무자는 소화기구의 위치 및 운영방침을 숙지하여 유사시 신속히 사용할 수있어야 한다.
12. 기기의 과열, 불평형, 음향, 진동, 냄새, 계기의 영점조정 등의 이상 유무를 항상 감시하여야 한다.
13. 근무 교대 시는 근무사항을 철저히 인계인수한다.

제23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기의 조작에 임하여서는 목적내용 조작방법과 순서를 숙지하여 결과를 예상 함으로서 충분한 자신감을 가진 후에 시행한다.
2. 수전설비계통의 조작은 전력회사의 급전소 또는 영업소와 연락을 취한 후 시설관리팀장의 지휘 하에 조작하여야 한다.
3. 구내의 배전설비, 부하설비는 사용장소의 책임자와 연락을 취한 후에 조작한다.
4. 주개폐기가 나이프 스위치인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부하를 차단한 후 개폐한다.
5. 기기조작 장소의 주위를 항상 정리 정돈한다.
6. 기기의 예비품은 저장방법에 주의하여 손상, 습기 등이 없이 완전한 상태로보관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행한다.

제24조 (전기설비의 이상이나 고장 시 조치)

1. 점검이나 순시 중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총무과장과 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의거 처리토록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송전정지등의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2. 사고 장소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건전부분과 불량부분을 구분하는 정밀검사로 2차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사고정도가 총무과장만으로 조치가 곤란한 경우 해당시설의 전문가를 비상초빙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제25조 (비상전원 안전관리)

1. 발전기 : 정전 시에는 지체 없이 발전기를 가동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2주일에 1회 이상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언제나 즉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가. 시동 전 주의사항

- 1) 엔진 및 제네레이터의 윤활유 유무사항
- 2) 연료 및 냉각수의 유무사항
- 3) 무부하 상태 확인

나. 운전 중 주의사항 : 운전 중 다음의 경우에는 엔진을 즉시 정지한다.

- 1) 이상음이 발생될 경우
- 2) 발열로 인하여 연기가 발생될 경우
- 3) 주요부위에 과열이 발생될 경우
- 4) 윤활유 압력이 급강하한 경우
- 5) 냉각수 온도가 급상승한 경우
- 6) 회전수가 급상승한 경우
- 7) 출력전압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충전지 시설

가. 설치장소에 통풍, 조명 및 방수에 유의하고 전용실 구획에 이상이 없도록 유의 한다.

나. 전지는 변형, 손상, 균열 등으로 액이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

다. 자동충전장치의 균등 충전 종료 후 부동충전상태로 복귀가 순조로워야 한다.

라. 비상전원으로 교체가 순조로워야 하며, 소방 설비 등을 정상 작동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26조 (소방시설 안전점검)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은 소방계획서에 의한다. 단, 주택법 제49조의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주택법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관리기준에 의해 소방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시설의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은 별표5와 같다.

제27조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소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근무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 각종 소화기의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4. 각종 소화기 및 소화전의 위치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상 유무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5. 각종 소화기는 피난 및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사용할 때에는 반출이 쉽도록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소방설비 안전관리)

1. 소화설비

가. 호스 및 관창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가압펌프 및 모터는 즉시 사용이 가능토록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소화전 박스내의 앵글밸브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방수구는 적정하게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마. 연결송수구의 살수설비헤드는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전기설비

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상용전원, 비상전원 및 기기의 파손, 단전성능 저하가 있으면 안된다.

나. 화재경보기의 설치상태와 기능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화재 속보설비의 발신기 및 표시등의 손상이나 기능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유도등 및 유도표식의 오손으로 시각장애가 없도록 하고 비상전원으로의 자동교체장치의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비상콘센트 설비는 변형이나 손상이 없고 보호 상자에 적정하게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바. 비상경보기구 및 설비는 비상사태의 발발 시 즉시 동작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29조 (승강기설비의 안전점검 및 보수)

승강기 설비의 안전점검 및 보수업무와 이에 따르는 책임은 승강기 유지보수회사에 위임하고 본 계획서에는 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 단 승강기 일상점검요령은 별표6과 같다.

제30조 (승강기 운전관리)

안전한 승강기 운행을 위하여 근무자는 다음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홍보하여 준수하게 한다.

1. 규정된 정원을 지켜 탑승인원을 초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승강기내에서는 거칠게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금연하여야 한다.
3. 어린이, 노약자, 신체부자유자 등은 보호자나 안내자가 동승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 하차 및 승차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5. 이삿짐의 운반 시 규정된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6. 화물의 운반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여러 번에 나누어 안전하게 운행토록 한다.

제31조 (승강기 설비의 안전관리)

1. 승강기 설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 점검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설비의 수명을 연장토록 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비상전화는 항상 정비되어 있어서 비상 시 즉시통화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3. 정전 시는 즉시 비상발전기를 가동시켜 승강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고가수조 또는 층별 출입구를 통하여 물이 승강기 기계실 및 설비에 유입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32조 (저수조 안전(위생)점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저수조를 관리하기 위하여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청소하며 저수조 안전 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은 별표7과 같다.

제33조 (급수시설 안전관리)

급수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취침, 음주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2. 펌프 또는 모터 배관의 소음 등 이상을 발견 시 즉시 가동을 중지하고 원인을분석 후 조치하여 가동하거나 상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3. 펌프의 가동에 관련된 전기공급 장치를 관련부서의 지원을 받아 수시로 점검한다.
4. 펌프축 패킹의 누수여부를 수시로 확인 및 조치한다.
5. 펌프 모터의 전류를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한다.
6. 각부 베어링의 이상소음 발생 시 확인조치하고, 정기적인 구리스 주유를 한다.
7. 펌프의 공회전이 되지 않도록 한다.
8. 지하저수조는 단수에 대비하여 항상 충만 시켜둔다.
9. 수질의 오염방지에 각별히 유의한다.
10. 맨홀 등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한다.
11. 고가수조실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12. 고가수조의 수위조절센서의 오동작이 되지 않도록 전극봉의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13. 저수조 등의 누수개소를 수시로 점검하여 조치한다.
14. 급수관 및 소방용수관의 보온 및 누수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이상 발견 시는 즉시 보완 및 보수한다.
15. 펌프장내의 각종 계기의 압력계이지는 정상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 확인한다.
16. 모터펌프의 설치위치 고, 저 및 볼트의 헐거움에 의한 소음 및 진동현상 방지
17. 저수조의 오버플로어에 의한 침수에 대비하여 고수위 경보장치 및 각종 안전장치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한다.
18. 각 세대별 층별, 고, 저압 밸런스를 조정하여 일부세대에 고압 또는 저압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조치한다.
19. 예비용 펌프는 주펌프의 고장 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시 확인 점검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토록 한다.
20. 펌프장 내부를 항상 청결히 한다.

제34조 (기타부대시설의 안전점검)

주택법 제49조의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주택법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관리기준에 의해 기타 부대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타부대시설의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은 별표9와 같다

제35조 (기타 시설의 안전관리)

기타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석축, 옹벽의 근방에서 회원 어르신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 회원 어르신들이 담벼락에 기어오르거나 그 위에서 다니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3. 회원 어르신들이 차도에서 무단 횡단하거나 서성거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각종 맨홀의 주위에서 회원 어르신들이 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물 옥상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엄금하고 특히 회원 어르신들이 올라가서 지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6. 3층 탁구장의 발코니에는 회원 어르신들이 주의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7. 출입문 강화도어 등에 회원 어르신들의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건축시설의 안전관리)

1. 내외의 콘크리트 부분에 균열이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을 따라 적정처리 하고 방수처리에 유념하여야 한다.
2. 옥상 난간 및 발코니 접합부의 부착상태에 유의하여 위해를 사전에 제거토록하여야 한다.
3. 철구조물의 도장은 최소한 3년에 1회 이상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발코니 난간에는 빨래를 널지 못하도록 주민에게 지도하고 계몽한다.
5. 실내 간벽도 주요한 구조벽으로 되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간벽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필히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내벽이나 천정에 누수가 있을 경우 원인을 규명 제거하고 누수부분은 상태에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제37조 (토목시설의 안전관리)

1.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에 부분적인 파손이나 침하현상이 있을 때는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이 없도록 철저히 보수한다.
2. 보도의 부분침하나 보도블럭의 파손 시는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즉시취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 차도에는 과속방지 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 단지 내에서 난폭운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노면구 배수구 등을 잘 정돈하여 강우 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차선(주차선)은 안전 및 미관을 위하여 2-3년에 1회 재도장 한다.
6. 석축 및 옹벽
 - 가. 해빙기 및 장마철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다.
 - 나. 균열이나 지하수의 유출이 있을 때는 전문가의 안전진단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 구조물 상단에 지표수 및 빗물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한다.
 - 라. 구조물의 하단 부근에는 파손 및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 마. 수해대책 장비는 잘 정비된 상태로 비치되어야 한다.
7. 맨홀, 하수도 및 빗물받이
 - 가. 원활한 배수와 악취제거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장마철 전후에 1-2회 준설하여야 한다.
 - 나. 구조물의 뚜껑이 파손 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항상 여분의 뚜껑을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교육

제38조 (교육계획)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월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9조 (교육훈련)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별지 서식 18을 이용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40조 (교안)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당해 시설의 실정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구분 및 통합한 교안을 시기에 적절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전점검의 중요성
2. 점검의 기술적 사항
3. 재해발생의 원인에 관한 사항
 - 가. 물건과 사람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것
 - 나. 물건의 불안전 상태나 사람의 불안전 행동
 - 다. 인간의 지식이나 행동의 다양성
 - 라. 개인적 안전태도가 다양하여 동일화가 어려움
4. 재해발생 시의 조치사항
5. 재해의 수습 및 복구방안

제41조 (교육의 성질)

교육훈련에 있어서 다음 성질의 구분에 의거 대상과 시기에 따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하여 모든 사람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법은 피하여야 한다.

1. 안전지식교육(두뇌적) : 위험장소, 상태의 방지방법
2. 안전기능교육(신체적) : 작업상 안전 동작 방법
3. 안전태도교육(심리적) : 안전한 행동과 태도의 습관화

제5장 기타 계획

제42조 (예산지원)

본 복지관은 본 계획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고, 회원 및 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3조 (계획 외 사항)

이상의 안전관리 예방대책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업무지침에 의하여 행한다.

제44조 (계획의 조정)

본 계획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메뉴얼(SOP)'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조정한다. 다만,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2. 이 계획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메뉴얼(SOP)'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조정한다.

3.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조정한 계획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메뉴얼(SOP)' 규정에 의거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의결 확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승인 후 2020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관리 적용대상 [제2조 관련]

시 설 물 현 황

연번	항 목	내 용	연번	항 목	내 용
1	시설명		6	건축면적	
2	소 재 지		7	연 면 적	
3	대지면적		8	용 적 율	
4	층 수		9	건 폐 율	
5	구 조		10	세 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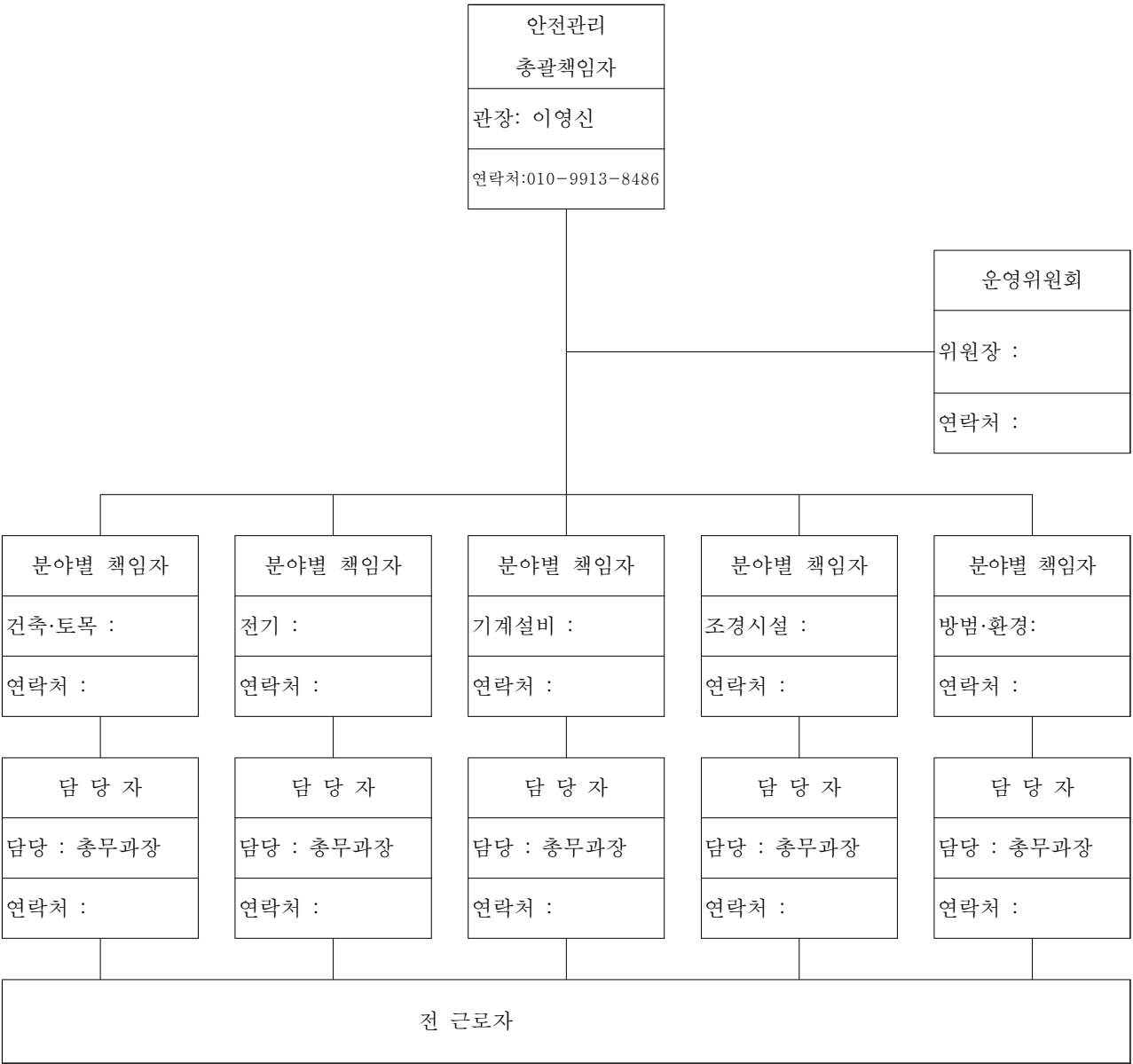
안전관리 대상 시설

연번	항목	시설종류	단 위	내 용	시설종류	단 위	내 용
1	부 대 시 설	복지관 안의 도로	폭, 길이		주차장	면적	
		옹벽, 축대	길이		사무소	면적	
		보안등	개소		조경시설	면적	
		담장	길이		안내표지판	개소	
		경비실	개소		통신시설 (MDF)	면적	
		배수시설	개소		난방시설	면적	
		급수시설	저수량, 개소		TV공청시설	설치개 소	
		전기시설	수전용량		가스공급 시설	면적	
		예비전원설비	발전용량		대피시설	면적	
		오수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		쓰레기처리 시설	개소, 면적	
2	복 리 시 설	승강기	설치대수		배수시설 (맨홀)	개소, 길이	
		쉼터	설치개소, 면적		회원 집회소	면적	
		경로당	면적		근린생활 시설	면적, 층수	
		주민운동시설	시설수량, 면적		도서실	면적	
		프로그램실	면적		주민문고	면적	

(별표 2) 시설별 안전관리자 선정 기준[제3조제2호 관련]

분 야 별	안 전 관 리 자		비 고
	정 책 임 자	부 책 임 자	
건 축· 토목	관련 중간관리자	관련 담당자	
전 기	관련 중간관리자	관련 담당자	
기 계 설 비	관련 중간관리자	관련 담당자	
조 경 시 설	관련 중간관리자	관련 담당자	
방 범, 환 경	관련 중간관리자	관련 담당자	

(그림 1) 안전관리 조직표(예시)



(별표 3) 보일러 및 펌프설비 안전점검 [제18조 관련]

보일러 및 펌프설비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

점검 회수	점 검 내 용	
매 주	1. 저수위 경보장치 및 자동급수 가동상태 2. 압력계 및 온도계의 작동상태 3. 화염 검출기의 화염 검출상태 4. 이그니션 코일의 점화상태 5. 수면계의 확인상태 6. 버너의 오일분사 노즐 및 분무기 상태	7. 배기가스 온도의 상태 8. 급유 가열온도 및 연료사용량 9. 보일러 본체에서의 가스 누설상태 10. 급유계통의 누유상태 11. 인화물질 방지 누유상태 12. 팽창 탱크의 보충수 확보 여부 13. 식수 저장조의 수위확보 여부
주 1회 이 상	1. 버너의 오일주입상태 2. 버너 회전축의 이상회전 및 축 균형 3. 보일러수의 부로우 상태 4. 점화용 가스의 배관누설점검 5. 연료 저장탱크의 잔류수 드레인 상태 6. 송풍기 벨트의 장력상태 7. 각종 모타 펌프의 카프팅 볼트 조임상태	8. 펌프에서의 누수상태 9. 모타 펌프의 구리스 주입상태 10. 모타 펌프 앵카볼트 조임상태 11. 식수탱크의 봉인상태 12. 고가수조의 플롯트 작동상태 13. 밸브에서의 누유상태 14. 연료주입구 주변의 정비상태
월 1회 이 상	1. 모타 펌프의 샤프트 수평결합 상태 2. 모터의 절연상태 3. 배관의 트랩작동상태 4. 응축수 탱크의 수질상태 5. 폐수탱크의 청소상태 6. 항시 개폐상태로 있는 각종 밸브의 회전상태	7. 오일 여과기의 청소상태 8. 보일러 노내의 노벽 손상유무 9. 연도의 더러움, 손상, 통풍압 이상유무 10. 수처리장치의 기능이상 유무 11. 디스펜서(방청제 용기)내부 방청제 용해 상태 점검
년 2회 이 상	1. 보일러 노내 축노상태 2. 수연관의 부착상태 3. 공기 예열기의 연관의 막힘상태 4. 배관의 모든 상태 5. 식수탱크의 청소상태 6. 각종탱크의 내부도장 상태 7. 각종 배관의 노후상태	8. 오수, 배수관의 연결부 탈락 누수상태 9. 정화조의 청소 및 소독상태 10. 각종 배관의 도장 및 부식여부 상태 11. 고가수조 및 지하 저수조 년2회 청소 여부

(별표 4) 변전설비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 [제21조 관련]

변전설비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

점검 회수	점 검 내 용	
일일 점검	1. 단로기에서 칼과 칼받이의 접촉상태 2. 차단기의 누유, 과열, 기름의 유량상태 3. 모선의 과열부식 손상상태 4. 변압기의 누유, 진동, 음향, 온도, 흡습계의 변색상태 5. 계기용 변성기의 외부손상, 부식발청, 음향 등 6. 수배전반 계기의 지시상태 7. 전력용 콘덴서 본체의 누유 오손 음향 진동 상태 8. 축전지 전해액의 양 9. 분전반 휴즈의 적부, 과열 열거움 상태 10. 보호계전기 청소 먼지 제거 11. 배전반 이면 배선표시등, 개폐기 휴즈의 이상유무 점검 12. 충전기 계기 전압조정기 충전전류 점검 13. 조명기구 점등 불량교환수리 14. 전동기 부하전류, 이상음, 전동온도측정	
주 점 검	1. 분전반 개폐기의 개폐시 과열상태 2. 전화단자함 내외 결선 접촉상태 3. 발전기의 축수진동 및 온도상태 4. 발전기 엔진오일상태 5. 발전기 계기 지시상태 6. 축전기 전해액의 보충 7. 축전지 전해액의 비중 측정 및 온도측정	
월 1회 이 상	1. 축전지 접속단자의 접촉상태 2. 발전기의 동작상태 3. 발전기 축수의 진동 및 온도상태 4. 원동기의 시운전상태 5. 원동기의 출력전압 및 주파수 측정 6. 원동기의 엔진 오일상태 7. 원동기의 냉각계통, 배기상태 8. 각동 변압기 및 큐비클 상태 9. 피뢰침 돌침 부분 및 접지선 점검 10. 텔레비전 공청설비 외부손실 청소 점검 11. 전동기 접지 점검 12. 각종 분전반 배전반의 접지 상태 점검 13. MOF VCB CT PT의 접지 상태 점검	
년 2회 이 상	1. 차단기 절연유의 양, 변색상태 2. 차단기의 조작기구의 동작상태 3. 모선 애자의 열화, 과열, 오손 4. 변압기, 온도계, 흡습기, 유면계의 이상 5. 수배전반보호계전기의 동작측정시험 6. 축전지, 상면부식 손상 7. 축전지 전조의 구열, 누액팽창상태 측정 8. 축전지 충전장치의 기능 9. 공청설비 각 채널의 수신 상태 10. 안테나 지선의 부식·단선 확인 11. 수신기 및 발신기의 동작상태 12. 인양기 로프의 부식 마모상태 13. 차단기 접지 저항 측정 및 절연 저항 14. 모선의 절연 저항측정 15. 변압기의 절연 저항측정 16. 피뢰기 절연 저항측정 17. 기타 각종 세대절연 저항 측정	

(별표 5) 소방설비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 [제26조 관련]

소방설비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

점검회수	점 검 내 용
일일점검	1. 소화전 모타 및 가압펌프의 작동상태 2. 소화전 호스의 부패여부 3. 앵글변의 핸들작동의 양호한 상태인가 4. 앵글변에서의 누수는 없는가. 5. 소화기는 지정된 위치에 확보되어 있는가. 6. 비상구등 및 기타 누름버튼 표시등의 기기 파손은 없는가 7. 연결송수관에 이물질의 투입은 되어있지 않는가 8. 소화기의 내부 충약 상태는 양호한가 9. 소화수 상시 확보는 되어 있는가 10. 호스의 카플링 훼손 여부 11. 제어반 전선의 훼손 여부 12. 모타 펌프의 축수 윤활유주입 여부

(별표 6) 승강기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제29조 관련]

승강기 일상점검 요령		
항 목	점 검 사 항	이 상 의 조 치 요 령
문	*문의 개폐는 원활한가? *이상음이나 진동은 없는가? *개폐 속도는 좋은가? *실내문 선단의 안전장치는 정상압에 작동되는가?	*각층의 승강장 문턱 및 카 문턱의 흠을 청소한다. *정상이 아닌 경우 보수회사에 연락하여 조치한다.
외 장	*문틀, 외문, 내문의 손상이나 오염여부 *카판넬, 조작반 등의 버튼류 오손여부 *환풍기의 오손 여부	*오염의 경우 청소를 실시한다. *기기의 변형이나 파손의 경우 보수회사에 통보 교체토록 지시한다.
조 명	*실내 조명등의 작동여부 및 오손여부	*오염이 심한 경우 청소 조치 *작동불량이나 전구의 단선의 경우 교체하고 교체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보수회사에 통보 조치한다.
게 시 물	*각종 명판이나 주의사항 등이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명판 및 게시물의 오염여부	*탈락의 경우 보수조치하고 오손의 경우 청소한다. *게시물이 없는 경우 보수회사에 통보하여 조치한다.
가 동 정 지	*가속, 감속에 이상이 있는가? *이상음, 진동유무 *착상시 카와 승강장과의 레벨유무	*이상이 있을 경우 보수회사에 통보
운 행	*승차감은 좋은가? *이상음, 진동유무	*이상이 있을 경우 보수회사에 통보
누 림 버튼	*표시램프의 점등상태 *누름버튼의 동작상태 *버튼카바의 오손여부	*오염부분의 청소실시 *필요시 교체하며,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보수회사에 통보하여 조치 *파손 및 작동불량의 경우 보수회사에 통보하여 조치한다.
인터폰	*부저의 작동여부 *경비실과의 통화여부	*작동상태 점검하여 보수회사 통보

(별표 7) 저수조 안전(위생)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제33조 관련]

점검회수	점 검 내 용	
월 1회 이상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물·용수 등이 없을 것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저수조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월류관·통기관 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별표 8) 기타부대시설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 [제37조 관련]

점검회수	점 검 내 용	
일 일	1. 각종 맨홀 및 정화조의 뚜껑이 파손 또는 열려 있는 곳이 있는가. 2. 노면에 장애물이 방치 또는 파손부분은 없는가. 3. 현관출입문의 유리가 깨진 곳이 있는가. 4. 쓰레기 통로가 막힌 곳이 있는가.	5. 비상출입문이 고장 또는 잠겨있지 않은가. 6. 단지 내 방치물이 없는가. 7. 벽의 과열 상태는 없는가. 8. 슬라브 부분의 금이 간곳은 없는가. 9. 옥상 난간의 파손은 없는가.
월1회 이 상	1. 모타 정격전류가 적정치에 조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드럼와이어 로프에 구리스가 적절히 칠해져 있는가 3. 모타 조정용 on / off스위치의 작동은 원활히 되는지의 여부 4. 모타 전원 마그네틱 스위치의 원활한 동작여부	5. 곤도라 와이어로프의 상한 리미트 스위치의 동작여부 6. 전기조작함의 방수가 잘되는지의 여부 7. 곤도라 고정용 앵카 및 견인 고리의 작동여부 8. 로프걸이에 안전 스프링 기능이 안전한가의 여부 확인

(서식 1) 시설물안전관리 책임자 명패[제3조제3호 관련]

○○○ 관리책임자	
정	○ ○ ○
부	○ ○ ○

(서식 2) 해빙기안전점검표(주택법시행규칙<별표 6>관련)

해빙기 안전점검표

점검주기 : 년1회 (3월)

점검일자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점 검 자 : (인) (인)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부장	관장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내 용
석축 및 담장	침 하		
	틈 발생 유무		
	기울기		
	주위 안전성		
옹 벽	침 하		
	균 열		
	기울기		
법 면	침 하		
	균 열		
	기 울 기		
급수시설	균 열(방수)		
	청소상태		
	안전장치 상태		
기 타	맨홀의 안전상태		
	도로 상태		
	각종 표지판 및 구축물의 안전상태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서식 3) 우기안전점검표(주택법시행규칙<별표 6>관련)

우기 안전점검표

점검주기 : 년1회 (6월)

점검일자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점 검 자 : (인) (인)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부장	관장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조 치 내 용
석 축	침 하		
	균 열		
	기울기		
	주위안전성		
옹 벽	침 하		
	균열		
	기울기		
	안전성		
법 면	침 하		
	균 열		
	기울기		
	안전성		
하수도	맨홀상태		
	배수상태		
	안전성		
옥 상	방수상태		
	배수상태		
	안테나등의 지지상태		

(서식 4) 월동기안전점검표(주택법시행규칙<별표 6>관련)

월동기 안전점검표

점검주기 : 년1회 (11월)

점검일자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점 검 자 : (인) (인)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부장	관장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동파방지	공동구 각종 배관의 노출 및 동파 우려 부위의 보완여부		
	옥상 물탱크실 배관의 보온상태 및 물탱크 뚜껑의 밀폐상태		
동해방지	석축, 옹벽의 균열 및 기초 침하 우려여부		
	도로의 균열 및 침하여부		
	놀이터 시설물 관리상태		
소화설비	소화기 보관상태 및 위치		
	소화전 배관의 보온상태		
	스프링클러 및 소화전 펌프의 작동상태		
	화재수신반 동작상태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서식 5) 건축시설물안전점검표(주택법시행규칙<별표 6>관련)

건축시설물 안전점검표

점검주기 : 년4회 (2, 5, 8, 11월)

점검일자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점 검 자 : (인) (인)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부장	관장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조치내용
1	옥상 및 각층 외벽의 균열로 낙반 될 부분은 없는가?		
2	옥상의 방수 및 균열 상태는?		
3	핏트 내벽의 균열 및 지반의 침하 로 인한 침수 여부는?		
4	발코니 철난간의 부식으로 인한 위 험 요소는?		
5	하수도 맨홀이 이물로 인하여 막힐 우려는?		
6	각동 지반 및 보도 불력의 침하로 인한 위험 요소는?		
7	각동 지하실에 위험 물질이 적재되 어 있는 곳은 없나?		
8	각동 지하실 및 옥상 비상문은 비 상시 사용이 가능한가?		
9	어린이 놀이터 그네 회전 부분의 마모 등 놀이기구의 위험요소는 없 는가?		
10	기타 시설의 미비 된 사항은?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서식 6) 기계설비안전점검표(주택법시행규칙<별표 6>관련)

기계설비 안전점검표

점검주기 : 년4회 (2, 5, 8, 11월)

점검일자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점 검 자 : (인) (인)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부장	관장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기계실	각 열교환기의 스케일 유무		
	온도조절기 이상유무		
	온수 및 난방수의 공급온도 적정유무		
	온수 및 난방펌프의 누수, 이상유무		
펌프실	각 펌프의 누수 및 이음발생유무		
	저수조의 저수량 적정유무		
	소방 펌프류의 적정압력유무		
공동구	핏트 내 균열 및 침하로 인한 침수유무		
	각 배관의 드레인 작동유무		
	에어벤트 상태점검		
	누수 및 보온상태		
	배수펌프 작동상태		
	저수조 청결상태		
물탱크실	자동제어 작동상태		
	물탱크 내 청결상태		
	시건장치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서식 7) 소방설비안전점검표

소방설비 안전점검표

점검주기 : 일일점검

점검일자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점 검 자 : (인) (인)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부장	관장

번호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1	소화전 모타 및 가압펌프의 작동상태		
2	소화전 호스의 부패여부		
3	앵글변의 핸들작동은 양호한 상태인가		
4	앵글변에서의 누수는 없는가		
5	소화기는 지정된 위치에 확보되어 있는가		
6	비상구 및 기타 누름버튼표시등의 기기파손은 없는가		
7	연결송수관에 이물질의 투입은 없는가		
8	소화기의 내부 충약 상태는 양호한가		
9	소화수 상시 확보는 되어 있는가		
10	호스의 커플링 훼손 여부		
11	제어반 전선의 훼손 여부		
12	모타펌프의 축수 윤활유 주입여부		
13	비상탈출용 에어메트는 정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14	유도표시 및 유도등의 점등상태는 양호한가		
15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작동은 양호한가		
16	감지기의 오동작 및 기능불량은 없는가		
17	연결송수구 및 연결살수설비는 상시 사용이 가능한가		
18	소방용수의 압력탱크의 압력계이지는 정상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19	소방용수 공급펌프는 상시작동이 가능한가		
20	옥내소화전 표시등의 점등상태는 양호한가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서식 8) 토목, 건축, 기타시설 안전점검표

토목, 건축, 기타시설 안전점검표

점검주기 : 일일점검

점검일자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점 검 자 : (인) (인)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부장	관장

번호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1	각종 맨홀 및 뚜껑의 파손은 없는가, 열린 곳은 없는가		
2	노면에 장애물이 방치되거나 파손된 곳은 없는가		
3	현관출입문, 계단, 복도 기타 공용부분의 유리창이 깨진 곳은 없는가		
4	비상출입문의 고장은 없는가		
5	계단 및 복도 등의 공유부분에 물건의 적재 및 방치물은 없는가		
6	모든 건축물 내외벽의 균열은 없는가		
7	옥상 파라펫 및 난간의 파손부위는 없는가		
8	건물 하부 및 도로 등의 파손이나 지반침하하는 없는가		
9	화단의 고사목 또는 지지목 불량으로 넘어진 나무는 없는가		
10	단지 내 외등 및 계단등, 복도등의 점, 소등 시간은 적정시간에 이루어 지는가		
11	단지 경계벽 및 울타리 등이 파손 또는 훼손된 곳은 없는가		
12	보행자 전용도로의 보도 블록이 파손되거나 침하된 곳은 없는가		
13	타일, 인조석탈락, 계단 노스립 탈락 등은 없는가		
14	단지 내의 시설물에 불법 광고물 등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지는 않는가		
15	공동화장실의 청결 및 유지보수는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16	우수 집수정 및 트랜치는 적절히 청소되어 배수는 잘 되고 있는가		
17	동절기 수목보온 및 전정 등의 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18	단지 진입구 및 단지 내 통로의 차량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20	강화도어의 플로어힌지 오일압력상태 정상여부 및 누유상태 확인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서식 9) 전기설비 안전점검표

전기설비 안전점검표(일일 및 주 점검)

점검주기 : 일일 및 주 점검

점검일자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점 검 자 : (인) (인)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부장	관장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일 일 점 검	단로기의 칼과 칼받이의 접촉상태		
	차단기의 누유, 과열, 기름의 유량상태		
	모선의 과열 부식 손상상태		
	변압기의 누유, 진동, 음향, 온도, 흡습계의 변색상태		
	계기용 변성기의 외부손상, 부식, 방청, 음향 등의 상태		
	수, 배전반 계기의 지시상태		
	전력용 콘덴서 본체의 누유, 오손, 음향, 진동상태		
	축전지 전해액의 량		
	분전반 휴즈의 적부, 과열, 헐거움 상태		
	보호계전기 청소 먼지 제거		
	배전반 이면 배선표시등, 개폐기 휴즈의 이상유무 점검		
	충전기 계기 전압조정기 충전전류 점검		
	조명기구 점등불량 교환 수리		
	전동기 부하전류, 이상음, 전동기 온도측정		
주 점 검	분전반 개폐기의 개폐시 과열상태		
	MDF실 내외 결선 접촉상태		
	발전기의 축수진동 및 온도상태		
	발전기의 엔진오일 상태		
	발전기 계기 지시상태		
	축전지 전해액의 보충		
	축전지 전해액의 비중 및 온도측정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서식 10) 전기설비 안전점검표

전기설비 안전점검표(월별 및 반기별 점검)

점검주기 : 월별 및 반기별 점검

점검일자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점 검 자 : (인) (인)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부장	관장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월 별 점 검	축전지 접속단자의 접속 상태		
	발전기 동작상태		
	발전기 축수의 진동 및 온도상태		
	변압기 큐비클 상태		
	피뢰침 돌침 부분 및 접지선 점검		
	공청설비 출력 데시벨 측정 및 부속장비 청소		
	전동기 접기 점검		
	각종 분전반 배전반의 접지상태 점검		
	MOF VCB CT PT의 접지상태 점검		
반 기 별 점 검	차단기의 절연유 량, 변색		
	차단기 조작기구의 작동상태		
	모애자의 열화균열 오손		
	변압기, 온도계, 흡습기, 유면계의 이상유무		
	수 배전반 보호계전기의 동작 측정시험		
	축전지 상면 부식, 손상유무		
	축전지 전조의 균열, 누액 팽창여부		
	축전지 충전장치의 정상여부		
	공청설비 각 채널의 수신 상태		
	안테나 지선의 부식, 단선확인		
	수신기 및 발신기 동작상태		
	차단기, 변압기, 피뢰기의 절연저항 측정		
	모선의 절연저항 측정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서식 11) 펌프설비 안전점검표

펌프설비 안전점검표(일일 및 주 점검)

점검주기 : 일일 및 주점검

점검일자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점 검 자 : (인) (인)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부장	관장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펌 프	압력계 지침의 정상여부		
	축 직결상태 점검		
	패킹박스의 누수량확인		
	마그네틱 스위치 상태의 작동여부		
부대 시설	누수 및 지지금구의 손상여부		
	배관의 이음부, 접합부의 부식 또는 누수여부		
	각종 밸브의 작동상태 및 누수여부		
	배관의 보온상태 양호여부		
	배기팬 작동여부		
	펌프실 벽체 및 바닥 누수여부		
자동 제어	기능의 이상여부		
	단자의 이상여부		
펌 프 (주점검)	펌프스트레이너의 청소여부		
	윤활유의 주유상태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서식 12) 펌프설비 안전점검표

펌프설비 안전점검표(월별점검)

점검주기 : 월 점검

점검일자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점 검 자 : (인) (인)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부장	관장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펌 프	진동 및 축의 마모상태		
	축 베어링의 손상여부		
전동기	절연저항 * 고정자 및 코일은 모두 전동기 단자에서 측정 * 고정자코일 : 3000V미만 → 500V급 MΩ : 3000V이상 → 1,000V급 MΩ * 회전자코일 : 500V급 MΩ * 절연저항치 : 고정자 → 50MΩ이상 : 회전자 → 10MΩ이상		
	주유 : 축수에 주유는 제때하고 있는가		
	청소 : 기기의 더러움, 특히 단자의 오염여부		
	공극의 캡측정 : 고정자와 회전자의 캡을 측정하여 불평형을 조정		
	운전 중 각부의 온도조사 : 운전 중의 각부의 온도가 75℃ 이상인지 확인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서식 13) 저수조 안전점검표

저수조 안전(위생)점검표(월별점검)

점검주기 : 월 점검

점검일자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점 검 자 : (인) (인)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부장	관장

조사사항		점검기준	적부 (○·×)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물·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안의 상태	오물, 볏은 녹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안전할 것	
6	월류관·통기 관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서식 14) 승강기 안전점검표

승 강 기 점 검 일 지

점검주기 : 일일 점검

점검일자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점 검 자 : (인) (인)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부장	관장

점 검 부 위 및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 고
관 리	비상키 [도어키,카내조작반키,비 상용E/L의1.2차소방스위 치키,기계실키, 파킹스위치기 등]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관리 상태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보관 상태		
	비상연락망 체계	◇관리실, 전기실, 경비실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가		
	고장, 수리일지의 기록	◇고장, 수리시 일지작성 및 결재 여부 확인(기전, 경비실)		
승 강 장 △ 각 층 ▽	버튼	◇버튼 동작시 등록층에 정확히 도착 상태		
	표시기	◇승강장의 표시기(램프류 및 표시장치)의 작동상태		
	청결	◇승강로 내 물청소 등으로 인한 습기 유입 유무확인		
	외부 문	◇도어슈의 탈락등으로 도어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는가		
		◇도어의 여, 닫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가		
◇변형, 마모, 부식 등은 없는가				
카 내 부	부착물	◇이용자 안전수칙 및 비상연락망의 부착여부		
		◇승강기 관리카드의 부착여부		
	표시장치	◇충표시, 운행방향램프 등 램프류의 점등상태		
		◇기타 운행에 필요한 표시장치의 동작상태		
		◇조작반의 잠금장치의 잠금 상태		
	버튼	◇행선버튼의 동작상태		
		◇열림버튼의 동작상태		
	통화장치	◇카내 통화(인터폰)이나 경보장치의 통화상태		
	문단힘 안전장치	◇문 단힘 안전장치(세프티슈, 광전장치)의 작동상태		
	카의 문 및 착상	◇승강장문 및 카문의 변형, 마모, 부식 등 상태		
		◇문턱 홈에 이물질(흙,담배꽂초 등)의 삽입등 청결상태		
		◇문 개, 폐 동작이 원활한 상태인지 확인		
운행시 진동, 소음	◇정상운행 중 과도한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는지 확인			
기 계 실	기계실통로 및 출입문	◇통로에 장애물이나 현저하게 어둡지 않은가 확인		
		◇출입문의 시건장치의 시건 및 파손여부 확인		
	조명, 환기 및 누수	◇기계실내의 조명, 환기시설이 정확히 작동하는가 확인		
		◇천장이나 창문 등에서 누수 나 빗물 유입 가능성을 확인한다		
	수권조작용 핸들 및 레바	◇수권 조작용 핸들 및 레바가 준비되었는가 확인		
	전동기 및 권상기	◇이상한 발열이나 소음 등이 있는가 확인한다.		
기 타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서식 15) 안전교육일지

안 전 교 육 일 지

점검일자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점 검 자 : (인) (인)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부장	관장

교육의 구 분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일반 안전보건 교육(월2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16시간이상) 6. 기 타 ()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수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실시장소		비 고
특 기 사 항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서식16) 방 화 관 리 일 지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장 소 :

	담당	팀장	과장	부장	관 장
결 재					

(양호:O, 불량:× , 요정비:△)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 치
공용부분 방화관리 순 찰	1. 화재수신기의 정상작동 상태 확인		
	2. 유도등 및 유도 표지판의 탈락 및 점등 상태		
	3. 노후, 손상, 불량기구 사용여부		
	4. 화기의 사용 시 불연재 위에 전도되지 않는 상태 여부		
	5. 전열기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여 규정용량을 초과하 는 지 여부		
	6. 사용하지 않는 화기의 완전소화조치 및 전열기구의 전원차단 여부		
	7. 전선에 옷걸이 등을 걸어두었는지 여부		
	8. 직원 휴게실 등 화기 사용처 옆에 소화기 비치여부		
	9. 화기 사용 시 안전관리자가 화기 옆에서 관리하고 있 는지 여부		
	10. 방화순찰을 일 3회 실시하였는지 여부		
	11. 시정을 요하는 취약요인 즉시 조치사항 여부		
자 위 소방대	1. 자위 소방대원의 담당업무 내용을 전달하고 숙지하고 있는지의 확인(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실시) 2. 화기 사용 시 안전교육 실시 여부(매주 화·수요일)		
기 타			
점검 담당자 ()는 실제 점검을 완료하고 일지 작성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담당 : ㉡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서식17)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안 전 교 육 참 석 자 명 단

교육구분

20 년 월 일

정기교육 ☐, 안전보건특별교육 ☐, 신규채용자교육 ☐, 기타()

NO	직 종	성 명	서 명	NO	직 종	성 명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춘천동부노인복지관